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정재동 의원 발의]

의안번호

2490

발의일자 : 2024. 2. 2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

찬 성 자 : 엄샛별 의원

1. 제안이유

공동주택에서의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 대상 사업에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(안 제4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).
- 나.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.
- 다.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 지원한도율을 규정함(안 별표 1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85조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,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4. 2. 5. ~ 2. 13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

② 구청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 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별표 1 가.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지원사업란에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지원사업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지 원 사 업	구 지원 한도율(%)
7.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	7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대상 등) ① 구청장은	제4조(지원대상 등) ①
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	
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	
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	
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기	
준은 별표1과 같다.	
1.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	1
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.	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사.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
	육 프로그램 운영
<u>사</u> . (생 략)	<u>아</u> . (현행 사목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구청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
	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
	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
	지원할 수 있다.
<u>②</u> ~ <u>④</u> (생 략)	$\underline{3} \sim \underline{5}$ (현행 제 2 항부터 제 4
	항까지와 같음)

현	행	개	정	안	

[별표 1]

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(제4조 제1항 관련)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(제4조 제1항 관련)

1. 지원비율

제1항 제1호의 각목>

지 원 사 업	구 지원 한도율 (%)
1. ~ 6.(생 략)	(생 략)
<u>〈신 설〉</u>	<u>〈신 설〉</u> (생 략)
<u>7.</u> (생 략)	(생 략)

※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

[별표 1]

1. 지원비율

가. 공동체 활성화 사업<제4조 가. 공동체 활성화 사업<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목>

지 원 사 업	구 지원 한도율 (%)	비고 (증감률)
1. ~ 6.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7.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	<u>70</u>	(현행과 같음)
	(현행	
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	제7호와	
	같음)	

※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[시행 2023. 12. 29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21호, 2023. 12. 2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 및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10.14.>

제2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0.14.>

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지원대상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.<개정 2016.10.14., 2022.11.14.>

제4조(지원대상 등)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. 〈개정 2022.11.14., 2023.12.29.〉

1.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.

- 가.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, CCTV, 보행시설물(계단, 다리 등)의 설치·유지
- 나.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
- 다.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
- 라.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
- 마.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바.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
- 사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2.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. 다만,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.
- 가. 경로당의 유지보수
- 나.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
- 다.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
- 라.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
- 마.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· 보강
- 바. 공동주택 단지 내 운동시설의 보수
- 사.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
- 아. 자전거도로 ·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 · 개선
- 자.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
- 차.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및 친환경시설, 택배시설의 설치 · 개선
- 카.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· 개선

- 타.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
- 파.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·개보수
- 하.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,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
- 거.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시설 설치 · 개선사업
- 너.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· 개선사업
- 더.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전지
- 러.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· 개선사업
- 머. 외벽 보수(도색) 및 옥상 방수공사
- 버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(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) 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 가 자문단(이하 "자문단"이라 한다)을 30명 내외로 구성·운영하여 자 문할 수 있으며,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
-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(이하 "관리주체"라 한다,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)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 담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.

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구청장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- 1.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.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95조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다.
-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,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 〈신설 2022.11.14.〉

[본조신설 2016.10.14.]

제5조(지원신청)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(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)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 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
- 2.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
- 3.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
- 4.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
- 5.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
- 6.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
- 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,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・결정하도록 한다.
-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,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원사업의 시행)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.
-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7조(지원금의 사용)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,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

해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,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.
- 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
- 2.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- 3.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
- 4.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- 5.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
-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업의 보고, 조사, 검사, 정산 등)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,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 및 제99조에 따

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0.14.>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,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한다.

-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소관 국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〈개정 2023.12.29.〉
- 1. 주택, 건축, 복지,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5명 이내
- 2. 구의회 의원 2명 이내
- 3. 법률, 회계, 공동체, 조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6명 이내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

- 2.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
- 3.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
- 4.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·의결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1.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
- 2.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
- 3.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
- 4.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
-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%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.
-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

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.

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2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,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14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〈개정 2022. 11.14., 2023.12.29.〉

제15조 삭제 <2023.12.29.>

부 칙 (제448호, 2005.11.28)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6. 1. 1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 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 (제650호, 2011.01.01)

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705호, 2012.04.10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877호, 2016.10.14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280호, 2022.11.14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421호, 2023.12.29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2.04.10., 2023.12.29.>

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

(제4조 제1항 관련)

1. 지원비율

가. 공동체 활성화 사업(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목)

지 원 사 업	구 지원 한도율 (%)	비 고(증감률)
1.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, CCTV, 보행시설물(계단, 다리 등)의 설치· 유지	70	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% 증액
2.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	70	•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% 증액
3.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	70	 지원단지 규모에 따라 5% ~ 20% 증액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
4.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	60	지원금의 5% 증액 -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% 증액
5.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	50	-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이 60㎡미만으로 구성된 단지는 지원금의 20% 증액
6.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	50	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50	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
※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

나.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(제4조 제1항 제2호의 각목)

지 원 사 업	구 지원 한도율 (%)	비 고(증감률)
1. 경로당의 유지보수	60	
2.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	60	
3.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	60	
4.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	예산범 위 내	
5.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·보강	50	•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
6. 공동주택 단지 내 운동시설의 보수	50	•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
7.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·개선	50	의 10% 증액
8.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·개선	50	• 지원단지 규모에 따라 5% ~ 20% 증액
9.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	50	-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
10.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및 친환경시설, 택배시설의 설치·개선	50	은 지원금의 5% 증액 -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
11.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·개선	50	10% 증액
12.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	50	-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이
13.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·개보수	50	60 ^m 미만으로 구성된 단지 는 지원금의 20% 증액
14.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,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	50	•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
15.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시설 설치ㆍ개선사업	50	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 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
16.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·개선사업	50	원 가능
17.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전지	50	
18.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・개선사업	50	
19. 외벽 보수(도색) 및 옥상 방수공사	50	
20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50	

※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

2. 평가기준

가. 평가항목 및 배점

분야	평가부문	평가항목	배 점
	준공연수(15)	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	15 12 9 6 3
정량	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(15)	 전용면적 85㎡이하 세대 100% 전용면적 85㎡이하 세대 70% 이상 전용면적 85㎡이하 세대 50% 이상 전용면적 85㎡이하 세대 30% 이상 전용면적 85㎡이하 세대 30% 이하 	15 12 9 6 3
평가 (60) 단지 규모(15)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횟수(15)		 15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 1,000세대 이상 	15 12 9 6 3
		 5년간 지원내역 없음 1회 지원 2회 지원 3회 지원 4회 지원 	15 12 9 6 3
	긴급성(15)	•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·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	상 15 중 10 하 5
정성 평가 (40)	효과성(10)	•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, 주민 편의성 등	상 15 중 10 하 5
	필요성(15)	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,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 등 	상 15 중 10 하 5
	감 점	• 민원 발생, 실태조사 지적, 지원사업 이행 미비 등	-5이내

나.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

면기저스	90점	85점	80점	75점	70점	65점	60점	60점	шэ
평가점수	이상	이상	이상	이상	이상	이상	이상	미만	비고
증 감 률	110%	105%	100%	90%	80%	70%	60%	50%	_

3.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

- 가. 공동체 활성화 사업
 - 산정방법 : 전체사업비 × 구 분담률 × 제1호의 증감률 × 제2호의 평가점수

지원금 산정(예시)

-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
- 평가점수 90점 획득
- 1억원(전체사업비)×70%(구분담률)×110%(인근 지역주민 포함)×110%(임의관리 대상 증액 10%)×110%(평가점수 증액 10%)=9천3백1십7만원
- 나.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
 - 산정방법 : 전체사업비 × 구 분담률 × 제1호의 증감률 × 제2호의 평가점수

지원금 산정(예시)

-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도로 및 하수도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
- 평가점수 90점 획득
- 1억원(지원신청액)×60%(구분담률)×110%(임의관리 대상 증액 10%)×110%(평가점수 증액 10%) = 7천2백6십만원

4. 지원금의 상한액

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(지원금의 지원비율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지원예산액의 10%를 초과할 수 없다.

5. 지원제외 대상

- 가.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(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)
- 나.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
- 다.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
- 라.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 『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』 제36조에 의한 하자보수책 임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
- 마.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
- 바.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
- 사.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
- 아.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(단,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)

관계법령

П	공동주택관	4리	번
	00171	<u>.</u> – ı	

[시행 2024. 1. 1.] [법률 제18937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(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을 포함한다)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12. 29., 2023. 6. 13.〉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4. 1. 18.] [법률 제19213호, 2023. 1. 17., 타법개정]
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. 8. 6., 2023. 5. 16.〉
- 제5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 [전문개정 2010. 6. 8.]